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西서울 컨트리 클럽(이하 “클럽” 이라 칭한다)의 주중회원(연회원) 모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 용)

본 약관은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모두에 적용된다.

### 제 3 조 (약관의 성립 및 효력)

본 약관은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입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입회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되며, 본 약관의 효력도 발생한다.

## 제 2 장 입 회(모집)

### 제 4 조 (모집 인원)

모집 회원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의 1항에 의거 투자비 범위안에서 적정수를 모집한다.

### 제 5 조 (모집 방법)

당 클럽이 입회를 승인하고 신청자가 입회금을 완납 할 시 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한다.

### 제 6 조 (입회 신청)

당 클럽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당 클럽에 제출 하여야 하며 입회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 제 7 조 (입 회 보 증 금)

- 가. 회원은 입회신청시 입회금을 당 클럽에 완납하여야 한다.
- 나. 입회금은 주중회원(연회원)의 입회보증금으로써 당 클럽에 3년간 거치하며 탈퇴시 원금만 반환한다.

### 제 8 조 (입회자격의 제한)

- 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 입회를 제한 할 수 있다.
- 가. 당 클럽이 정한 신청서 및 입회구비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제출치아니한 자.

## 제 3 장 회원 운영 및 관리

### 제 9 조 (시설이용 및 회비)

- 가.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.
- 나. 시설을 이용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
### 제 10 조 (이용의 조건)

회원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예약, 각종요금, 락카사용, 기타 이용제한등 필요한 조건은 회사가 정하는 이용 약관을 따른다.

### 제 11 조 (이용의 권리)

- 가.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의 모든 개장일 중 평일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다.
- 나.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내장객을 동반 할 수 있다.
- 다. 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등의 행사에 참가 할 수 있으며,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안내문등을 배포 받을 수 있다.
- 라. 회원의 입회 기간은 3년이며 입회승인 받은 날 부터 적용 된다.
- 마. 본 모집약관 및 클럽의 제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

### 제 12 조 (회원의 의무)

- 가. 회원은 이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한다.
- 나.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 하여야 한다.
- 다.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라. 회원은 입회시 회사에 등록한 각종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.(주소, 직장, 기타 회원명부외 기재사항)
- 마. 회원은 그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없다.
- 바. 회원은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,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
### 제 13 조 (회원자격의 상실)

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가. 제명
- 나. 사망
- 다. 탈회

### 제 14 조 (회원의 자격제한)

회원의 다음 각항의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.

- 가.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.
- 나. 본 약관 및 클럽의 제반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.
- 다.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회원신상 변경등의 신고를 태만 하였을 경우.

### 제 15 조 (회원권의 양도, 양수)

- 가. 회원권의 양도,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최초의 입회일을 기준으로 한다.(입회기간만료 시 입회원금만 반환한다.)
- 나. 회원권의 양도, 명의변경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한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

### 제 16 조 (이사회)

- 가. 당 클럽약관에서 이사회라 함은 西서울관광(주) 이사회를 지칭하며 그 의결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.
- 나.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.

### 제 17 조 (운영 위원회)

당 클럽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위원회를 둔다.

## 제 5 장 객 원 (VISITOR)

### 제 18 조 (객원의 정의)

객원(VISITOR)은 회원이 본인의 책임하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반한 자를 칭한다.

### 제 19 조 (제 요금의 납입)

객원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프장 이용요금 및 기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경 기 규 칙

### 제 20 조 (경기 규칙)

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.

### 제 21 조 (LOCAL RULE 및 임시규칙)

본 클럽의 LOCAL RULE의 규정, 개정,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 적용 할 규칙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.

### 제 22 조 (관 습)

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.

## 부 칙

1.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가 결의로써 행한다.
2. 운영위원회 발족 이전의 위원회 직무는 회사 이사회에서 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.

위 회칙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.

입회자 :

인